

경기도 공고 제2025-5263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3일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두한 종합건설(주) (최영환)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73(관양동)	조경공사업 (10-0197)	영업정지 4개월 (2025.03.14. ~2025.07.13.)	건설업 등록기준 (기술능력) 미달 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10 조 위반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 제 3 호